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84호
2023년 5월 4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레					
○ 조 레	제 1968 호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홍 보 실	2	
○ 조 레	제 1969 호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기 획 예 산 과	5	
○ 조 레	제 1970 호	남동구 고문번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 획 예 산 과	9	
○ 조 레	제 1971 호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 획 예 산 과	12	
○ 조 레	제 1972 호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 자리 정 책 과	18	
○ 조 레	제 1973 호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전 총 괄 과	21	
○ 조 레	제 1974 호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총 무 과	23	
○ 조 레	제 1975 호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총 무 과	25	
○ 조 레	제 1976 호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민 원 봉 사 과	28	
○ 조 레	제 1977 호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민 원 봉 사 과	31	
○ 조 레	제 1978 호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기 업 지 원 과	37	
○ 조 레	제 1979 호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생 활 경 제 과	41	
○ 조 레	제 1980 호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복 지 정 책 과	45	
○ 조 레	제 1981 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복 지 정 책 과	50	
○ 조 레	제 1982 호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노 인 장 애 인 과	53	
○ 조 레	제 1983 호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노 인 장 애 인 과	57	
○ 조 레	제 1984 호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 성 가 족 과	62	
○ 조 레	제 1985 호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 성 가 족 과	65	
○ 조 레	제 1986 호	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환 경 보 전 과	67	
○ 조 레	제 1987 호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건 축 과	71	
○ 조 레	제 1988 호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건 강 증 진 과	73	
공 고					
○ 공 고	제 9 4 4 호	도림동 소곡소하천 정비사업(1단계)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치 수 과	77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68호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톡”을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포스트, 유튜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이란은”을 “이란”으로, “포함)외”를 “포함) 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소셜민원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소셜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블로그 기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민리포터”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영상에서 리포터, 출연자 등의 역할로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제3항 중 “소셜미디어 및 구 홈페이지”를 “소셜미디어”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주민리포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구정 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리포터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주민리포터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주민리포터는 구정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영상 콘텐츠에서 리포터, 출연자 등의 역할로 제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주민리포터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 제목 “(원고료 지급)”을 “(원고료와 참여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리포터가 생산에 참여한 영상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 해당 주민리포터에게 예산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중 “소셜기자”를 “소셜기자 및 주민리포터”로, “기자 활동”을 “활동”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소셜기자 및 주민리포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촉식, 교육, 연수 및 견학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취재에 필요한 수첩, 필기구 등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제2항 중 “소셜채널”을 “소셜채널”로, “소셜민원 창구”를 “소셜민원창구”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소셜민원의 신청·접수 등)”을 “(소셜민원의 신청·처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셜부서에서는 소셜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민원을 해당 부서에 지체없이 전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소셜미디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체 특성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 법률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수정 : (안 제2조)
- 소셜미디어 매체 특성에 맞는 용어로 수정 : (안 제12조)
- 주민참여형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정비 : (안 제20조의2, 제21조 ~ 제23조)
- 현행 법률에 맞도록 수정 : (안 제3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69호

남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단체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3.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현장이나 시설 또는 단체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5년이 경과한 날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운영비를 지원받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해마다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표지판 등의 철거) ① 표지판 및 지원표시를 철거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경우

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2. 철거 가능한 경우

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②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③ 그 밖에 표지판 및 지원표시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기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며,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비용부담과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표지판 등의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조 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70호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자문료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소송비용 및 자문료 지급기준 (제7조, 제8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승 소 사 례 금
	소송목적의 값(소가)	착 수 금	
신청사건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원	없 음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원	
본안사건 (민사·행정 소송)	무소가사건 및 2천만원 미만	800,000원	1. 전부 승소시 : 착수 금의 150% 2. 50% 이상 승소시 : 전부 승소시 지급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 : 착수금의 2분의 1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1,000,000원	
	4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1,500,000원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000,000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500,000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000,000원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3,500,000원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00,000원	
	5억원 이상	4,500,000원	
상 소 심	본안사건 착수금 지급 금액		
환송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형사사건	개인단독사건	2,000,000원	없 음
	다수관련사건	3,000,000원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5,000,000원	
기 타 소송비용	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감정·검증료 4. 증인여비 5. 기타비용	실 비	
법률자문료	건당	100,000원(부가세 포함) ※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경우에 한정함	

[비고]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본다.

2. 착수금은 심급별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급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고문변호사가 구 또는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교체된 경우에는 사건수행의 정도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한다.

3. 소가는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4.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료를 현실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률자문료 건당 7만원 → 10만원 : 별표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직위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71호

직위 명칭 등 변경을 위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획예산과장

제2조(「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4조(「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남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된 직위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개정된 직위명칭으로 본다.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1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정보통신사고	정보통신과
국방부	1.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총괄과
행정안전부	1. 정부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3.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 몸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 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안전총괄과, 관련부서 도로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농축수산과
문화체육관광부	1.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농림축산식품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농축수산과
산업통상자원부	1. 가스 수급 및 누출사고 2. 원유 수급 사고 3. 전력 사고 4.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생활경제과 " 기업지원과 "
보건복지부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 사고	보건행정과
환경부	1.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환경보전과
고용노동부	1.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안전총괄과, 기업지원과
국토교통부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 도로터널 사고 3. 육상화물운송 사고 4. 지하철 사고 5.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해양수산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문화재청	1.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1. 산불 2. 산사태	공원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4]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17조제2항제1호 관련)

비상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주관부서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6+α명	13+α+β명	18+α+β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명	과장급 1명	과장급 1명
	1) 상 황 관 리 총 괄 반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6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	(1명) · 운영지원과 직원 1명	(1명) · 운영지원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분야별 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생활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홍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총무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남동 및 논현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남동 및 공단소방서)		
	3) 관 계 지 역재난관 리책임기관 지원반 (β)	· 한국전력공사(남인천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인천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인천지사), 인천도시가스, KT인천지사,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 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17조제2항제2호 관련)

본 부 장	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통 제 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 α + β + γ 명	
	반 장	과장급 1명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청소행정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분야별 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생활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총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행정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행정과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총무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남동 및 논현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남동 및 공단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β)		· 한국전력공사(남인천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인천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인천지사), 인천도시가스, KT인천지사, 대한적십자사(인천지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우리구의 현행 직위명칭 및 분장사무를 반영하지 않은 규정을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직위명칭 변경 :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 소관 부서 변경 :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72호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거주하는 만”을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하여 남동구 청년참여단(이하 “청년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청년창업기업의 구매촉진) 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창업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 창업자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청년복지 증진과 청년창업기업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남동구 청년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청년들이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 주요내용

- 청년창업기업의 구매촉진 관련 조항 신설(안 제12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73호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를 “국군제559 방첩부대”로 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보완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조직구성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변경된 부대명칭 현행화 : (안 제3조제2항제7호)
- 제3조제5항과 중복 규정된 조항 삭제 : (안 제4조제4항)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74호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대학”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모집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및 기타 대학의 재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체험연수생 모집시 사이버대학(원격대학) 및 기타 대학의 재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대학(종류) 범위를 확대
- 청년지원정책 및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 가능자를 청년기본법상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확화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75호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구 분	소 재 지
남동구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구월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04 (구월동)
구월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208 (구월동)
구월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84 (구월동)
구월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7 (구월동)
간석1동	(임시청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24번길 21 (간석동)
간석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16번길 47 (간석동)
간석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86 (간석동)
간석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벽돌말로19번길 7 (간석동)
만수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1 (만수동)
만수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46 (만수동)
만수3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 11 (만수동)
만수4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50번길 39 (만수동)
만수5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경로28번길 3 (만수동)
만수6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47 (만수동)
장수서창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 28 (서창동)
서창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43 (서창동)
남촌도림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32 (남촌동)
논현1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로 115 (논현동)
논현2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248 (논현동)
논현고잔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32 (논현동)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현행화함으로써 체계적이며 내실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간석1동,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청사 소재지 변경
(별표)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76호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2. 7. 11. 개정, 2023. 4.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1조~제3조)
-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4조)
-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5조)
- 민원실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6조)
-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안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5월 4일

남동구 조례 제1977호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을 ““법””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법 제9조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주관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국장”을 “당연직 위원은 건축과장”으로,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를 “공공기관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주관부서의 소속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서식과 별지 제3호”를 “서식,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출석한 위촉위원”을 “참석한 위촉위원,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의견을 진술한 자”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정보의 공표방법(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공 표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개범위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용 계획	업무계획(전부)	기획예산과	연1회	2월 중	인터넷 또는 인쇄물
	예산편성현황	기획예산과	연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기금운용계획 및 현황	기획예산과	연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결 산(전부)	재무과	연1회	결산승인일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2.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목록, 지출금액 사용일시	총무과	월1회	10일 이내	인터넷 게재
3.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과 관련한 검사·측정 결과	전 부	환경보전과	월1회	검사결과후 즉시	인터넷 게재
4. 구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	통계연보	정보통신과	연1회	통계조사 집계 완료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인구통계	총무과	월1회		
	구정현황	총무과	수시		
5.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자체평가결과 보고서	기획예산과	연1회	2월중	인터넷 또는 인쇄물
6.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사항	공개청구 내용 및 심의결정사항	민원봉사과	수시	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7. 식품 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부정불량식품 및 회수공고	식품위생과	수시	공고 후 7일이내	인터넷 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및 단속현황	환경보전과	수시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8.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보육시설 현황	보육정책과	수시	분기1회	인터넷 게재
	사회복지시설 현황	복지정책과 아동복지과 여성가족과	수시	분기1회	인터넷 게재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노인장애인과	수시	분기1회	인터넷 게재
9. 각종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내역 및 잔액	신고포상금 예산 및 잔액	해당부서	월1회	매월말 또는 초	인터넷 게재
10.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법령기준에 따름	해당부서	수시	법령기준에 따름	인터넷 게재

구 분		공 표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공개범위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11. 중장기 종합계획	중장기종합계획서	기획예산과	연1회	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1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사용료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수수료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공공요금조정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13. 주요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결과물	해당부서	수시	계획 확정후 1개월 이내	인터넷 또는 인쇄물
14.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보고서	진단결과 보고서	도로과	수시	진단후 1개월 이내	인터넷 게재
15.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의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도로과	수시	예산편성후 1개월 이내 집행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1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안전총괄과	수시	예산편성후 1개월 이내 집행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17.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경쟁 입찰을 통한 공사	공사 및 물품 발주계획 목록	해당부서	수시	15일 이내	인터넷 게재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법령기준에 따름	재무과	수시	계약체결일 다음달 10일 이내	인터넷 게재
19.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심의결과	세무1과	수시	3일 이내	인터넷 게재
20. 구에서 주최한 공청회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해당부서	수시	개최후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21.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문	해당부서	수시	7일 이내	인터넷 게재

[별지 제2호 서식] (제15조 관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사 유	

「남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남동구 정보공개심의회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변경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 : (안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 누락된 별지 제4호 서식 추가 : 제15조 기록유지
- 불필요한 조문 삭제 : 제18조 시행규칙
- 별표 공표부서 변경과 별지 제2호 서식 문구 삭제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78호

남동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동구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남동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남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등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ESG행정·ESG경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항 (안 제3조, 제4조)
-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경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 성과평가 및 혜택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79호

남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3.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소모품 지원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남동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현지실사
2.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3. 착한가격업소 이용 캠페인 등 홍보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모니터요원의 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제8조에 따른 모니터요원이 가격·위생·청결도 등을 조사할 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공무원, 모니터 요원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관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안 제4조)
- 착한가격업소의 지원(안 제5조)
- 이용 활성화(안 제6조)
- 운영현황 점검 등(안 제7조)
- 모니터요원 운영(안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년 5월 4일

남동구 조례 제1980호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남동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7.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8.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10.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사업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 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에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고, 「남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상과 지원사업 범위를 조정·확대하여 사회적 고립·고독사 문제를 범사회적으로 고찰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공공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6조 ~ 제7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안 제8조 ~ 제9조)
- 사무의 위탁 (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81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인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을 “주민등록
(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으로,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건강생활지원수당”으로 한다.

제9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당”을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신청일이 속한”을 “제8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으로, “지급한다”를 “지급하며,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를 “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 적용) 제8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남동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보훈예우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일부 모호한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8조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82호

남동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4.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5.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구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장애인 등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성, 접근성,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확보된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 지원사업 (안 제6조)
- 자문 및 협력 (안 제7조, 제8조)
- 표창 (안 제9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83호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남동구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발급대상자 명단”을 “발급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참여업소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효도카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 서식]

[효도카드제 참여업소 안내표지]



※ 규격 : 가로 13cm × 세로 13cm

[별지 제4호 서식]

효도카드 발급대상

《 동 》

[illegible]

[별지 제5호 서식]

[효도카드]

발급번호 : 남동구		동 (제 - 호)	
효도카드			
성명		생년월일	사진부착 (25mmx30mm)
주소			
연락처			
이 어르신은 『남동구 효도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경로대상 어르신이오니 정성을 다하여 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청			

《 앞 면 》

※ 사진부착란 왼쪽하단에 효도카드 발급 담당자 간인

유 의 사 항

1. 효도카드 참여업소 표지판 부착업소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하였으니,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효도카드 참여업소』스티커 부착업소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 시 불편하신 사항은 거주지 해당 동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뒷 면 》

※ 규격 : 가로 9cm × 세로 5cm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본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용어 등을 일치시키고, 공직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직명 표기 및 단순·반복적인 조례개정 방지를 위해 계속 현행화해야 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본법」 개정(2023.6.28.시행)에 따라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제2조제1호, 제7조)
- 조례 조문 및 서식 용어 정비(제8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 “발급대상자 명단” → “발급대장”으로 변경
-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2021.10.1.시행)에 따라 폐지된 남동구 도시브랜드 등을 삭제하고 심벌마크로 변경(별지 제2호서식)
- 지방자치단체장 직명이 표기되어 있는 할인이용권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 소지가 있고 부서명칭 및 담당자 등이 변경될 때 마다 현행화해야 하는 효도카드 서식 변경(별지 제5호서식)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84호

남동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등”이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3.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이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등을 위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 인권 침해 또는 차별을 당한 청소년 본인 또는 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상담이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에 대한 발생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및 직업 능력개발 지도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활동에 필요한 교육지원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정 밖 청소년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등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가정 밖 청소년등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가정 밖 청소년등의 권리 (안 제5조)
- 사업지원, 교육 및 홍보 (안 제6조, 제7조)
- 통합지원체계 활용(안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85호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등에 대하여”를 “등에 대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한 교육”을 “대한 교육”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불법촬영 안심지역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상시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 안심지역에 인증마크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내 공중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예방과 더불어 불법촬영 안심존을 지정함으로써 구민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남동구를 찾는 타 지역 사람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불법촬영 안심지역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86호

남동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설치된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되는 것에 대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방지를 목적으로 일정 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s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 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예방과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남동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2. 프리트 패턴
3. 데칼
4. 유리블록

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남동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인공구조물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남동구에 소재한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남동구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인천광역시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 안 제5조)
-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사항 (안 제6조)
-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
- 교류협력 등 (안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호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87호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난구조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명구조기구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 거주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피난구조설비 범위를 확대하고, 설치비 자부담 조항을 삭제해 화재안전취약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피난구조설비 지원 범위 확대 (안 제2조제2호)
-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 지원 시 자부담 근거 등 삭제 (안 제6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박 종 효

2023. 5. 4.

남동구 조례 제1988호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남동구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시술비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3.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
4.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난임시술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2.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
2.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난임부부 극복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난임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안 제4조 ~ 제5조)
- 난임수술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안 제6조 ~ 제7조)
-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조치 (안 제8조 ~ 제9조)
- 비밀누설의 금지 (안 제10조)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944호

**도림동 소곡소하천 정비사업(1단계)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2-1460호(2022. 8. 3.)로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이 공고되고, 남동구 공고 제2022-1827호(2022. 10. 7.)로 시행계획변경이 공고된 도림동 소곡소하천 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4.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도림동 소곡소하천 정비사업(1단계)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40-9 ~ 621-1 일원
3.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5. 4. ~ 5. 18.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 남동구청 치수과 방문 또는 전화(☎032-453-8463)
7. 열람서류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치수과(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수용재결신청사업 열람공고대상

(단위 : 원)

구분	사 업 명	토지			지장물		영업권		사업시행자 제시액합계	사업시행자
		필지	면적(㎡)	제시액	건수	제시액	건수	제시액		
1	도림동 소곡소하천 정비사업(1단계)	5	399.00	332,293,990	6	15,220,830			347,514,82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치수과) 032)453-8463,조용근

사업시행자 조서(토 지)

[별지 제1목록]도림동 소곡소하천 정비사업(1단계)(23수용0041)

Page1/1

수 용 토 지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 소
			공부	실제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85-4	전	전	116㎡	김*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9 1**동 ****호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84-120	도	도	22㎡	이*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0*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55	도	도	22㎡ x3/4	이*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4**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62-55	도	도	22㎡ x1/4	이*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5*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84-119	전	전	192㎡	지*복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50 ***동 ****호		
3	"	584-121	잡	잡	47㎡	"	"		
						소계(2)건			
							- 이하여백 -		
	토 지 합 계	5필지			399.000	5인		0인	

사업시행자 조서(지 장 물)

Page 1 / 1

[별지 제1목록]도림동 소곡소하천 정비사업(1단계)(23수용0041)

수 용 지 장 물 의 표 시					소 유 자		관 계 인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면적(m ²)	성 명	주 소	성명/ 권리의종류	주 소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85-5	나무 감나무6주, 대추나무1주, 벚나무1주	1식	김*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랜드마크로 19 ***동 ****호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84-119	비닐하우스	210m ²	지*복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50 ***동 ****호		
2	"	"	간이화장실5개, 정화조	1식	"	"		
3	"	584-121	비닐하우스	39.5m ²	"	"		
4	"	"	배전반 및 조명시설	1식	"	"		
5	"	"	동력 농업용 5kw	1식	"	"		
					소계(5)건			
						- 이하여백 -		
	물건의 합계	6건			2인		0인	